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5년 4월 24일

- 회부일자 : 1995년 4월 24일

3. 개정이유

부동산 중개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된 상위 법규에 위배된 조항을 개정하여 일치시키고 동 조례 별표 1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기를 「분수」에서 「퍼센트」로 개정코자 함.

4. 주요골자

- 충청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중 "제20조 제3항"을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1항"으로 하고,
- 별표 1의 매매 및 교환시 거래가액 8억원 이상일때 수수료 최고 한도액 300만원을 삭제, 매매 교환이외 임대차 등 거래가액 4억원 이상일때 수수료 최고한도액 150만원을 삭제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분수"를 "퍼센트"로 표기함

5. 검토의견

- 부동산 중개업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1항 개정으로 부동산 수수료 한도를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교환의 경우 0.15~0.9%" "임대차의 경우 0.15~0.8%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거래 가액이 매매교환시 20억원과 임대차시 8억원을 초과할 경우 충청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액이 동법 시행규칙 수수료 범위내에서 정하도록한 규정에 위배되어 매매교환 8억원 이상일때와 임대차 4억원 이상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액 3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삭제함이 타당하며.
- 매매교환 8억원 미만과 임대차 4억원 미만의 중개수수료 한도액 존치는 동법시행규칙에 위배됨 없이 소액 거래 서민들의 수수료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수수료를 표기방법을 분수로 표기하던 것을 퍼센트 표기로의 개정은 수치인식이 빠르며 명료한 표기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